# 

**2018년 여름** 통권 제6호



####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이슈

외국의 재정동향







**2018년 여름** 통권 제6호

##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0	2
주요 재정이슈										0	6
이구이 재저도히	ŧ									. 1	3



#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5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7.9조원 증가한 214.0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5%p 상승한 47.8%

• 총수입의 증가 및 진도율 상승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6.9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8년도 5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6조원 증가한 205.3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4%p 상승한 47.5%

• 총지출의 증가 및 진도율 상승은 주로 일반회계 지출 증가와 기금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일반회계 지출은 15.2조원, 기금지출은 4.1조원 증가

#### 2017/2018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2017			201	8(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5월 (누계, B)	진도율 (C=B/A)	추경 (D)	5월 (당월)	1~5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총수입	423.1	196.0	46.3	447.7	44.1	214.0	47.8	17.9	1.5	
- 국세수입	251.1	123.8	49.3	268.1	30.9	140.7	52.5	16.9	3.2	
- 세외수입	26.4	12.8	48.5	27.2	1.7	12.7	46.5	△0.1	△2.0	
- 기금수입	145.6	59.4	40.8	152.4	11.5	60.6	39.8	1.2	△1.0	
- 세입세출외 <sup>1)</sup>	_	0.05	-	_	_	0.00	-	△0.05	_	
총지출	410.1	184.8	45.0	432.7	35.7	205.3	47.5	20.6	2.4	
- 일반회계	229.8	107.0	46.6	250.2	22.6	122.2	48.8	15.2	2.3	
- 특별회계	50.6	24.3	48.0	47.8	3.8	23.4	49.0	△0.8	1.0	
- 기금	129.8	49.8	38.3	134.7	9.3	53.8	40.0	4.1	1.6	

주: 1)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7월호, 2018. 7.

## 재정수지

2018년도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8.7조원 흑자로 전년동기 대비 2.6조원 감소하였으며, 관리 재정수지는 9.2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 2.2조원 확대

-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 감소의 주요 사유는 총수입 증가(17.9조원)에 비해 총지출이 큰 폭(20.6조원) 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0.4조원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 2.2조원 확대

#### 2017/2018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20	17		전년동기		
	추경	1~5월 (누계, A)	추경	5월 (당월)	1~5월 (누계, B)	대비 증감 (B-A)
총수입(a)	423.1	196.0	447.7	44.1	214.0	17.9
총지출(b)	410.1	184.8	432.7	35.7	205.3	20.6
통합재정수지(c=a-b)	13.0	11.3	15.1	8.4	8.7	△2.6
사회보장성기금수지(d)	41.9	18.3	46.5	4.0	17.9	△0.4
관리재정수지(e=c-d)	△28.9	△7.0	∆31.4	4.4	∆9.2	△2.2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7월호, 2018. 7.

#### 재정수지 추이(누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7월호, 2018. 7.

## 국가채무

## 2018년도 5월 중앙정부 채무는 669.1조원으로 전월대비 9.6조원 증가하였으며, 2017년말 627.4조원 대비 41.7조원 증가

• 전월대비 증가의 주된 사유는 국고채권이 크게 증가(9.3조원)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대비 증가 사유 역시 국고채권 증가(40.5조원)에서 기인

※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루어지나,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 이루어지므로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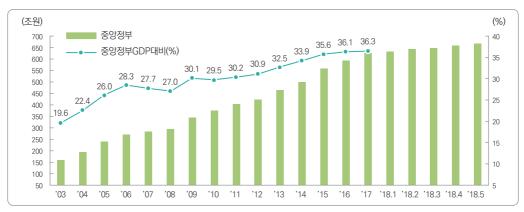
#### 2017/2018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단위: 조원)

	2016	20	17		2018(잠정)				증감		
	결산 (A)	결산 (B)	전년 (B-A)	본예산	추경	4월(C)	5월(D)	전년 (D-B)	전월 (D-C)		
중앙정부 채무	591.9	627.4	35.4	675.1	667.4	659.4	669.1	41.7	9.6		
<b>■</b> 국채	587.5	623.3	35.8	671.3	663.5	655.4	665.1	41.7	9.6		
- 국고채권	516.9	546.7	29.8	588.9	581.4	578.0	587.2	40.5	9.3		
- 국민주택채권	64.0	69.4	5.4	74.1	74.4	70.2	70.6	1.2	0.3		
- 외평채권(외화)	6.7	7.2	0.5	8.4	7.7	7.3	7.2	0.0	△0.0		
■ 차입금	3.9	3.8	△0.1	3.7	3.8	3.8	3.8	△0.0	_		
■ 국고채무부담행위	0.5	0.2	△0.3	0.2	0.2	0.2	0.2	△0.0	_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7월호, 2018. 7.

####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7월호, 2018. 7.

김성은 예산분석관(02-788-4634)

## 주요 재정이슈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 발표
-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 환경부로 이관, 통합물관리 실시
-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 현황
- 국가 R&D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예산 추이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추진
-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발표
-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 주요 재정관련 평가보고서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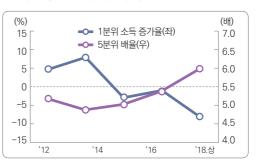
#### 정부는 2018년 7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

-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여건 악화
  -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영세사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18년 상반기 각각  $\triangle$ 20.1만명,  $\triangle$ 7.3만명)
  -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 등으로 분배 상황도 악화(5분위 배율 5.95로 '03년 이래 최고치)

#### 임시·일용직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추이

# (만명, 전년비) 2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 -10 -20 30 '12 '14 '16 '18.상

#### 1분위 소득 및 5분위 배율 추이



주: 5분위 배율 = 5분위(소득 상위 20%) 소득 /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자료: 관계부처 한동.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 2018, 7, 18.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여건 악화는 구조적·경기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
  - 인구구조 변화의 빠른 진행에 따른 고령층의 일자리·소득기반 미흡으로 노인빈곤율이 2015년 기준 46%에 이르는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OECD 평균 노인빈곤율 13%)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경쟁 심화, 수수료·임대료·채무상환 등 비용부담 증가로 소득감소, 폐업확대
  - 자동화·온라인화 등으로 비숙련·저소득 노동자 일자리 감소
- 이에 정부는 2018년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등과 함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2018.7.18.)
  - 정부는 고령화의 진전 속도,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였을 때, 지금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한 내수활력 제고가 필요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 정부는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소득지원 추진 계획

- 정부는 위기지역 일자리 추가 지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 등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노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노인의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임
  - 2018년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지원하고, 2019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2018년 51만개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하여 총 60만개 지원
  - 기초연금의 경우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18.9.)하고, 소득 하위 20%에 대해 '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당초 '21년)
- 또한, 소상공인페이 구축 등 카드수수료부담 완화 등을 통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등을 통하여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 구축(18년)을 통하여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 으로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을 시행(19년)
  -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 확대(18년)
- 아울러, EITC 확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함
  - EITC 연령·재산·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166만→334만 가구) 및 최대지원액 확대(단독가구+65만원, 홑벌이+60만원, 맞벌이+50만원)로 지급액 큰 폭으로 증가 (1.2→3.8조원)¹)
  - 2019년부터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한도 상향(월 30만원/3개월→월 50만원/6개월)
  -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시 생계급여 지원(19년)
- 그 밖에, 소비 활성화, 투자 활성화, 대표규제 혁신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는 한편, 8월 중 핵심규제를 선정하여 하반기 중 규제개선 추진

<sup>1)</sup> 정부는 2018.7.30. 「세법개정안」에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확대 방안 등을 추가 발표

#### 대상별 주요 지원 사항

	일할 기회	위기지역 일자리 3천개 추가 지원 (18년)
	확대 	일자리 60만개 지원 ('19년)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 신설 〉
어르신		기초연금 21 → 25만원 인상 (*18년)
이트진	1 = 7101	소득하위 20% →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19년)
	소득지원	생계급여 받는 75세 이상 → 근로 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공제(18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보유 60세 이상 →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19년)
		소상공인페이 구축(수수료 0%대 초반, '18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18년)
	경영부담 완화	운영자금 등 저금리 대출(해내리) 1조원 확대(*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범위내 지원 지속 (*19년)
영세 자영업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5→10년으로 연장 ('18년)
사용합사	영업·재기 안전망 강화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조기정리 (약 3.5만명, 4,800억원) (*18년)
		업종 전환, 사업정리 재취업 지원 강화(19년)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광고 판촉행사시 점주 사전동의 의무화(18년)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19년)
		자활 급여 최저임금의 70→80% 수준 인상(*19년)
	근로유인 제고	자활장려금 도입('19년) - 생계급여 산정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최저임금 감안 압류금지 최저금액(150만원) 상향 (18년)
임시·일용직 등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6개월) 지급( 19년)
임시·일용식 등 취약계층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지원 ('19년)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 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공제(18년)
	기초생활 보장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19년) ※ 재산요건 완화(억원) : (대도시)1.35→1.88 (중소)0.85→1.18 (농어촌)0.73→1.01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19년) - 대상 (14세 →18세 미만 자녀), 지원액(월 13만원 →17만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2018. 7. 18.

#### 일자리·소득분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 지속적 확충 예정

 정부는 일자리·소득분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구조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할 계획

####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적용 제외 - (현행) '17.11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주거급여(중위소득 43%): '18.10월(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중위소득 40%): '19.1월(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시), '22.1월(소득하위 70% 노인 포함시)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19.1월(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 확대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의료급여 **(大** 중증장애인 포함시 노인 포함시 생계급여 .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생계급여 51 생계급여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3년 조기 폐지

기초연금 확대

#### - '18.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약 500만명) - '19년부터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약 150만명, 계획 대비 2년 조기 인상) - '20년부터 소득 하위 20~40% 30만원으로 인상(계획 대비 1년 조기 인상) 어르신 소득하위70% 20.9만원 ▶ 25만원 \_\_\_ 30만원 18년 9월 19년 20년 21년 소득하위 40~70% **30만원 ◀** 1년 조기 인상 소득하위 20~40% 30만원 <-----소득하위 20% 2년 조기 인상

실업안전망 강화 (현행) 지급액(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최대 8개월) - 실업급여 최대 지급기간 : (한국) 8개월 (OECD) 18개월 - 순임금대체율(실업후 한달/1년, %) : (한국) 51/32 (OECD) 64/53

(개선) 지급액(평균임금 50→60%), 지급기간(최대 8→9개월) 확대 추진 ※ 고용보험법 개정안 旣제출(18.4월 정부안 제출, 환노위 계류중)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2018. 7. 18.

기초연금 조기 인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기 추진,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 급여 인상 등 자립 지원 강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 주거급여('18.10월),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시 '19.1월), 의료급여(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시 '19.1월, 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시 '22.1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기 추진으로 빈곤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자활근로 참여자는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장려금 지급(월 최대 38.5만원 예상)
- 저소득 노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기초연금 조기 인상
  - 소득 하위 20% 및 20~4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상향 조정('18.8월 월 21만원, '18.9월 부터 25만원) 시점을 2021년에서 각각 2019년 및 2020년으로 앞당김
-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통한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혁신형고용안정 모델 구축 등 실업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평균임금의 50% → 60% 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최대 8개월 → 9개월)
  - 노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추진 등
- 아동수당(0~5세, 월 10만원) 지급을 통한 저출산 대응 강화, 청년 구직활동 지원 지속 실시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추진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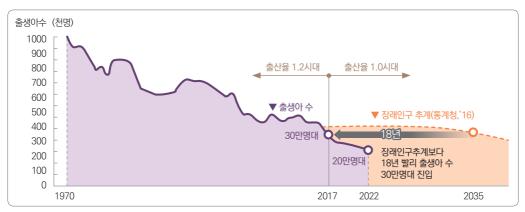
- 일자리 및 소득지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07~'11년 3.6% → '12~'16년 3.0% → '17~'21년 2.8%)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확충이 수반될 필요
  - 소득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의 확대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 발표

#### '저출산 대책' 추진 배경

- 2017년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 및 출생아 수(35.8만명)를 기록하여 출생아 수 30만명 대 진입 시점이
   2016년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짐
  - 2018년에는 출생아 수가 약 32만명,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됨

#### 인구변화 전망



자료: 통계청

- 주거·교육비·경력단절·장시간근로·독박육아 등 '자녀 비용 ≥ 효용'인 사회구조로 인한 결혼·출산 기피현상
- 엄마가 비혼상태인 출생아 비중(2014년 1.9%)이 OECD 평균(39.9%) 보다 낮은 수준이며,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하더라도 입양시키는 경우가 많음(2016년 입양아동 중 비혼모 아동 91.8%)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2018.7.5.)

-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정책방향 전환(출산율 목표 →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 선정
-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추세 완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 필요

- 출산·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 결혼·출산·양육이 개인(특히 여성)의 희생·부담이 되지 않도록 2040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양성 평등한 노동·양육 환경 마련 및 모든 출생 존중 역점

#### 정책 변화 방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1. 목표	출산율·출생아 수	2040 세대 삶의 질		
2. 접근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 국가주도 인식 개선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합리적 선택		
3. 타킷 대상	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	청년, 아이, 여성 행복, 서민, 중산층		
4. 정책 주안점	보육	주거, 일·생활 균형 강화 모든 출생 존중		
5. 실천 전략		제도 활용 문턱 완화, 실천에 중점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7. 5.)

#### 핵심과제 세부내용 및 향후계획

- 5대 개혁방안은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④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소요(약 2조 9천억원)를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
  - ①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未적용자·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②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③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등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5,000억원
  - ①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일 1시간 단축 추진, ②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에 3,000억원
  -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에 700억원
  -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에 연간 2조원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국토교통부, 2018.7.)은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
    - \*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증가 규모: 신혼부부 60→88만, 청년 56.5→75만

#### 과제별 소관부처 및 재정소요

개혁방향	과제명	소관부처	재정소요
	고용보험 未 가입자(특수고용직 등) 출산지원금	고용부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및 임산부 부담 경감	복지부	
출생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복지부	E 0000481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학교 안팎의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	교육부 복지부	5,000억원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가정, 공동체 돌봄으로 사각지대 보완	여가부	
아이와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고용부	
함께하는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고용부	3,000억원
일·생활균형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고용부 여가부	
모든 아동과	한부모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 및 지원액 확대	여가부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여가부 등	700억원
청년의 평등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7-1	0.7.01
출발 지원	청년가구 주거지원	국토부	2조원
제대로 쓰는	워라밸 집중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기재부 고용부	-
재정/효율적 행정지원체계	결혼에서 육아까지 통합 정보망 구축	행안부	_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자료를 재정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2005.9.1.) 이후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지속적 재정지원 ('16년 21조, '17년 24조, '18년 26조, 국비 및 지방비 포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향후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일자리, 주거대책, 난임 등 지원, 맞춤형 돌봄 확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에 예산 투입
  - 이번 대책에서는 정책 목표(출산율·출생아수 → 2040 세대 삶의 질), 타깃 대상(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 → 청년, 아동, 여성 행복, 서민, 중산층), 정책 주안점(보육 → 주거, 워라밸 강화, 모든 출생 존중) 등을 변경하여 제대로 쓰는 재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책의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

##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 환경부로 이관, 통합물관리 실시

#### 물관리 일원화 추진 배경

-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량관리를, 환경부에서 수질관리를 담당해왔고, 그간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옴
  - 환경부(지방상수도·하수처리)와 국토교통부(댐·광역상수도·하천)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수), 행정안전부(방재·안전), 해양수산부(연안·하구), 산업통상자원부(수력발전) 등 다수의 부처가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1990년대 초반까지는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수량과 수질 모두 담당하였으나,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수질관련 기능이 환경처(현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이때부터 수량과 수질업무가 이원화됨
  - 부처별로 물관리가 분산 추진됨에 따라 정부 부처간 연계부족, 사업 중복 및 과잉투자, 규제 중첩 등의 부작용, 지역 간 갈등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참고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2개 국가가 환경부처 중심으로 물관리를 통합·운영하고 있음

####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국회 본회의 의결(2018.5.28.)

- 국회는 2017년 9월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8년 5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을 의결함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됨
  - 「물관리기본법」제정으로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이 마련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물분쟁 조정을 위한 체계가 마련됨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각종 정부지원의 근거와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 「정부조직법」개정

#### ('18.6.8.공포·시행)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 「물관리기본법」제정

#### ('18.6.12.공포, '19.6.13.시행)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 국가물관리위원회(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유역물 관리위원회(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 설치
-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sub>1</sub> 제정

#### ('18.6.12. 공포, '18.12.13.시행)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 수립·시행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 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

#### 물관리기능 업무 조정으로 약 6.000억원의 예산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 법률: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제·개정 및 이관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의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됨
  - 다만,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자원(토지, 도로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업무로 남겨둠에 따라「하천법」과「하천편입토지보상법」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며,「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화경부로 이관됨
- 조직: 국토교통부의 1국, 3과, 4개 소속기관(홍수통제소), 인력 188명이 환경부로 이관
  -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 이관
  -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2018년 기준 직원수 4,856명, 예산 4조 5천억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주무관청이 환경부로 변경

- 예산: 2018년 기준 6,824억원이 환경부로 이관
  - 상수도, 수자원정책, 댐건설, 댐관리, 하천관리, 단지개발, R&D 등 사업비 6,592억원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 232억원
  - 이관 예산 6,824억원 중 집행잔액 1,604억원 이체(2018.6.11. 이체 완료)

#### 법률, 조직, 예산 변경사항

7 8	기존	변	경		
구분	(국토교통부)	환경부 이관	국토교통부 존치		
소 관 법 률	<ul> <li>하천법</li> <li>하천편입토지보상법</li> <li>수자원법</li> <li>댐건설</li> <li>한국수자원공사법</li> <li>지하수법</li> <li>친수구역법</li> </ul>	총 5개  • 수자원법  • 댐건설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 지하수법  • 친수구역법	총 2개 • 하천법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조 직	총 333명 (본부 49명, 소속기관 284명) • (본부) 수자원정책국(4과 1팀) • (소속) 지방국토청(5개), 홍수통제소(4개) • (산하) 수자원공사	총 188명 (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 (본부) 수자원정책국(3개과) • (소속) 홍수통제소(4개) • (산하) 수자원공사	총 145명 (본부 13명, 소속기관 132명) • (본부) 하천계획과 존치 • (소속) 지방국토청(5개)		
예 산 (사업비)	1조 8,152억원	6,592억원  • 공업용수도건설  • 광역상수도건설  • 수자원계획 및 조사 등	1조 1,559억원  • 국가하천정비(일부)  • 지방하천정비  • 하천편입토지보상 등		

자료 : 환경부, 국토교통부

#### 소관부처가 변경된 주요 사업

(단위: 억원)

		예	2018년		
구분	주요내용	환경부 이관사업	국토교통부 존치사업	이체액	
합 계(A+B)		6,824	12,722	1,604	
사업비(A)		6,592	11,552	1,469	
-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산단 용수공급, 광역상수도 사업 등	930	0	280	
- 수자원정책	지하수관리, 국제협력, 전국유역조사 등	232	0	157	

		예	산	· 2018년	
구분	주요내용	환경부 이관사업	국토교통부 존치사업	2018년 이체액	
- 댐건설	댐 치수능력 증대(충주댐, 남강댐, 평화의 댐) 등	388	0	184	
- 댐관리	댐유지관리, 댐안정성강화	561	0	211	
	수자원공사지원	2,964	. 0	144	
	홍수예보, 수문조사, 가뭄조사 등	414	0	239	
- 하천관리	치수연구개발	64	296	40	
	국가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20	5,219	15	
	지방하천정비	0	5,691	0	
- 단지개발	공업용수도건설지원	581	24	166	
- R&D	물관리연구, 수요대응형물공급서비스, 플랜트연구	391	244	0	
- 기타	정보화, ODA, 소속기관 전산운영경비	47	78	33	
	본부인건비(총 1,184명 중 188명 이체)	176	981	101	
인건비, 기본경비(B)	본부 기본경비(총 1,184명 중 36명 이체)	16	189	10	
	홍수통제소 기본경비	40	0	24	

자료: 환경부, 국토교통부

#### 통합물관리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및 효과성 제고 필요

- 환경부는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
  - 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로 효율성 제고 및 물환경 관리, 가뭄과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 친환경적인 친수구역 조정사업 추진 등 4대강 자연성 회복, 물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물산업 진흥
- 물관리 일원화가 수자원의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조정 메커니즘 마련, 집행기관 간 유기적 협조 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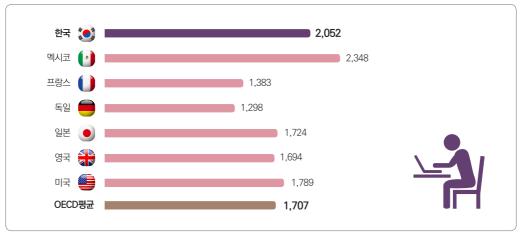
##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 현황

####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2018.7.1.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시간 단축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평균(1,707시간)보다 약 350시간이 많고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
-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근로에 제한이 없는 노동시간 특례업종<sup>1)</sup>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 지속 제기

#### 2016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OECD, Stats.OECD.org(임금근로자 기준)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2.28.)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2018년 7월 1일, 300인 미만 사업장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전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

<sup>1)</sup> 노사가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26개 업종으로, (1)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2)도매 및 상품중개업, (3)소매업, (4)금융업, (5)보험 및 연금업, (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우편업, (8)전기통신업, (9)교육서비스업, (10)연구개발업, (11)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2)광고업, (13)숙박업, (14)음식점 및 주점업, (15)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6)방송업, (17)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8)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19)사회복지서비스업, (20)미용·옥탕 및 유사서비스업, (21)육상운송업, (22)수상운송업, (23)항공운송업, (25)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26)보건업이 해당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8.7.1. (21개 특례제외업종은 20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20.1.1. 5~50인 미만: 2021.7.1.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2018.7.1. 시행)

- 1주 노동시간 40→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5시간

####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2018.7.1. 시행)

26개 → 5개
 트레우지 연조: 유산우소연('노선 )

특례유지 업종: 육상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021.7.1.~2022.12.31.)

• 1주 8시간 내(노사 서면 합의 시)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공포 즉시 시행. 2018.3.20.)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 통상임금 수준



자료: 고용노동부

##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2018.5.17.)

-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근로시간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며,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맞는 특화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함
- 구체적으로 ①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②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③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④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를 추진
  -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금액 인상 및 재직자 임금보전 확대
  -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우대,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추진
  -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컨설팅 제공 및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
  - 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훈련 강화 및 일자리 매칭을 위한 온·오프라인 인프라 강화를 통해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 특례제외 업종 등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등을 권고하여 유예기가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충분한 준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개편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사업개요	2018 예산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된 확대·개편 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와 재직자의 임금보전 비용 지원	213억 1,500만원	<ul> <li>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금액 인상,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 확대</li> <li>300인 미만         <ul> <li>신규채용(1인당): 월40~80만원, 1~2년→월60~100만원, 1~3년 임금보전(1인당): 월10~40만원, 1~2년→월10~40만원, 1~3년</li> </ul> </li> <li>300인 이상         <ul> <li>신규채용(1인당): 월40만원→월60만원</li> <li>임금보전: 500인 이하 제조업→500인 이하 제조업+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li> </ul> </li> <li>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중년고용장려금 등 고용노동부의 타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li> </ul>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컨설팅 지원	본예산 122억 3,200만원  추경 증액 38억 2,700만원	• 지방 노동청 등을 통하여 장시간 근로 취약사업장을 발굴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업종·분야별 우수사례를 매뉴얼화·배포 ·2018년 200개소(본예산)→650개소(추경)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노동관계법령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본예산 18억 500만원 추경 증액 5억 6,000만원	<ul> <li>근로여건 취약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규모 확대</li> <li>2018년 6,500개소(본예산) → 8,000개소(추경)</li> <li>노동시간 관련 교육규모 확대</li> <li>2018년 4,000명(본예산) → 9,000명(추경)</li> </ul>
재직자 훈련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기간제·단시간· 파견·일용노동자, 대규모기업 45세 이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비용 지원	953억 2,300만원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되는 개인시간을 능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포함
일·생활 균형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 확대하는 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	120억 7,100만원	<ul> <li>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인사담당자 대상 설명회, 사업주단체와 연계한 사업 안내 등 추진</li> </ul>

자료: 고용노동부

####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시 원활한 안착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 및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이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사회예산분석과 조가영 예산분석관(02-788-4636)

## 국가 R&D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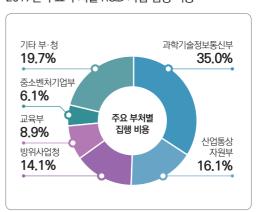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국가 R&D 사업 추진 실적 을 발표(2018.6.25.)

- 35개 부처·청·위원회의 R&D 사업(61,280개 과제)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 결과, 2017년 R&D 예산 총집행액은 19조 3,927억원<sup>1)</sup>으로 최근 5년간(2013~2017년) 연평균 3.5% 증가한 규모
  - 5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R&D 예산 총집행액의 80.3%(15조 5.643억원)를 집행

#### 2013~2017년 R&D 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 (억원) 집행액 -0- 과제수 188,747 190,044 193,927 20,000 169,139 176,395 60.000 61,280 15,000 50,493 54,433 54,827 50,865 45,000 10,000 30,000 5.000 15,000 '17 '14 15 '16

#### 2017년 주요 부처별 R&D 사업 집행 비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2018.6.25

- 연구개발 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기관(7조 8,838억원, 40.7%), 기업(4조 5,382억원, 23.4%)²), 대학(4조 4,052억원, 22.7%) 순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
  -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의 예산 집행액 비중은 감소 추세
    - 출연연구기관 41.3%(2013년)→40.7%(2017년), 대학 23.5%(2013년)→22.7%(2017년)
  -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예산 집행액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중견기업은 증가
    - 대기업 5.1%(2013년)→2.2%(2017년), 중소기업 13.0%(2013년)→16.3%(2017년), 중견기업 3.9% (2013년)→4.9%(2017년)

<sup>1) 2017</sup>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19조 5,018억원(추경포함)대비 99.4% 집행

<sup>2)</sup>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 연구개발 수행 주체별 R&D 예산의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R&D 전체	169,139	176,395	188,747	190,044	193,927
출연연구기관	69,923	74,966	78,235	78,305	78,838
2001/10	(41.3)	(42.5)	(41.4)	(41.2)	(40.7)
대학	39,718	41,023	42,617	42,727	44,052
-11-4	(23.5)	(23.3)	(22.6)	(22.5)	(22.7)
중소기업	21,926	24,150	27,902	28,972	31,686
9±/16	(13.0)	(13.7)	(14.8)	(15.2)	(16.3)
중견기업	6,608	5,437	6,130	7,442	9,504
61/1H	(3.9)	(3.1)	(3.2)	(3.9)	(4.9)
대기업	8,608	6,923	6,278	4,871	4,192)
네기급	(5.1)	(3.9)	(3.3)	(2.6)	(2.2)
기타	22,356	23,896	27,585	27,727	25,655

- 주: 1. R&D 예산 및 연구개발주체별 집행액은 각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
  - 2. ( )는 비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sup>3)</sup>(5조 4,245억원, 40.0%), 개발연구<sup>4)</sup>(5조 1,235억원, 37.8%), 응용연구<sup>5)</sup>(3조 222억원, 22.3%) 순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
  - R&D 예산 집행액 중 기초연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개발연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기초연구 34.1%(2013년)→40.0%(2017년), 응용연구 22.1%(2013년)→22.3%(2017년), 개발연구 43.8%(2013년)→37.8%(2017년)

#### 연구개발 단계별 R&D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초연구	40,450	44,528	50,303	51,359	54,245
	(34.1)	(36.3)	(38.4)	(38.9)	(40.0)
응용연구	26,220	27,357	26,785	27,697	30,222
	(22.1)	(22.3)	(20.4)	(21.0)	(22.3)
개발연구	51,911	50,921	54,004	52,911	51,235
	(43.8)	(41.5)	(41.2)	(40.1)	(37.8)
소계	118,581	122,806	131,092	131,967	135,702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연구	50,558	53,589	57,655	58,077	58,225

주: 1. 기타연구는 인력양성사업, 시설장비구축사업, 교육연수훈련사업 등으로 연구개발 단계 구분이 불가능한 사업에 해당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sup>2.</sup> 연구개발 단계별 예산 구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분석 결과

<sup>3) &#</sup>x27;기초연구'는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

<sup>4) &#</sup>x27;개발연구'는 기초 및 응용연구와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연구

<sup>5) &#</sup>x27;응용연구'는 기초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 연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2018.6.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인'을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sup>6)</sup>에서 심의
  - 전체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R&D사업 예산과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사업 예산으로 구분되며, 주요 R&D사업 예산은 2018년 전체 R&D 예산의 80.2% 수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R&D사업은 5개 유형으로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R&D, 출연(연)·국공립(연) 등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비, 출연(연) 운영경비<sup>7)</sup>, 국방 R&D,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등임
    -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그 외 사업 예산은 인문사회 R&D 등으로 2018년 3.9조원

R&D사업 (단위: 조원)

2018년 R&D사업 예산 총 19.7조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주요 R&D사	업)	기획재정부 심의					
기초원천, 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R&D	9.6	인문사회 R&D	0.9				
출연(연), 국공립(연) 등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비	3.0	대학 지원금	1.0				
출연(연) 운영경비	1.1	국공립(연) 운영경비	0.5				
국방R&D	1.7	고도 보안성 국방R&D	1.3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등	0.4	정책연구비, ODA 등	0.1				
소계	15.8	소계	3.9				

주: 출연(연) 운영경비는 2019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에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차년도의 연구기관 운영경비를 포함한 주요 R&D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sup>6)</sup>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무총리·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인 심의기구로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사업 조정·예산운영을 심의

<sup>7)</sup> 출연(연) 운영경비는 2019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예산규모 산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한 2019년 R&D 규모는 15.8조원이며, 중점투자 분야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등임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1조 6,754억원, 17.6% 증가), 혁신성장 선도분야(8,476억원, 27.2% 증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1조 7,467억원, 13.4% 증가), 재난·재해 및 안전 대응(1조 491억원, 16.7% 증가), 인재양성·일자리 창출(1조 572억원, 16.2% 증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

#### 주요 R&D 예산의 중점투자 분야

(단위: 억원, %)

	2018	2019	증감	
주요 분야	예산(A)	국과심 예산 배분·조정안(B)	(B-A)	(B-A)/A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14,243	16,754	2,511	17.6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중점 추진	6,664	8,476	1,812	27.2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	15,397	17,467	2,070	13.4
재난·재해 및 안전 대응	8,988	10,491	1,593	16.7
인재양성·일자리 창출	9,098	10,572	1,474	16.2
에너지·바이오 신산업 육성	9,569	10,293	724	7.6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16,834	18,095	1,261	7.5
미세먼지·생활환경	976	1,584	608	62.3
국민 건강 연구	568	777	209	36.9

주: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는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 분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전략적 R&D 투자 필요

-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는 정부 지원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개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2022년까지 생애 첫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생애 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할 예정
- 중소기업 지원 R&D 예산은 기업 자체적인 R&D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2015년 2.41%에서 2040년 3.2%로 증가하도록 유도할 계획
-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강회를 위한 R&D 예산은 민간 기업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

산업예산분석과 윤성식 예산분석관(02-788-4666)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배경

-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등 부과체계 관련 문제 지속 제기
  - 소득 이외 재산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과중
  - 보수 외의 고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과소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고소득자·고액재산가 무임승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보수월액 (보수외소득 연 7,200만원 초과 시 보수외소득에 보험료 부과, '12.9월 이후)	■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평가소득(성별, 연령 등으로 추정), 재산, 자동차
산정방식	보수월액 ×정률	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납부자	사용자 50%, 가입자 본인 50%	가입자 본인 100%
부양가족	피부양자로 관리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세대원으로 관리 (세대주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자료: 각종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17년 3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2018.7.1. 시행)
  -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추진
  - 직장과 지역 간 소득 파악차이, 보험료 인상자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편
    - 2018년 7월 1단계 개편후,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개편 시행 예정

#### 개편 주요 내용

-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되, 고소득자·고액재산가의 보험료는 인상
-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및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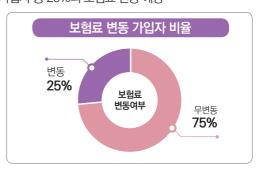
구분	개편 주요 내용	보험료 영향
지역가입자	<ul> <li>저소득층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및 최저보험료 도입</li> <li>* 평가소득 :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으로 성별·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 적용</li> <li>* 최저보험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월 13,100원('18년)의 최저보험료 부과</li> <li>- 재산보험료 공제 도입</li> </ul>	인하 589만 세대 인상
(763만 세대)	* 과세표준액 5천만원 이하 재산에 대해 500~1,200만원 공제 - 자동차 보험료 면제·축소 * 4천만원 미만 소형차(1,600cc 이하), 생계용 차량,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면제 등 -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험료 일부 인상 * 연소득 3,860만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 초과	39만 세대  무변동 135만 세대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 (기존)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연 7,200만원 초과 시 보험료율의 50% 적용 → (개편) 연 3,400만원 초과 시 보험료율의 100% 적용  - 보험료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  * 기존 보험료 상한선은 2010년 설정 후 장기간 고정	인상 15만 세대  무변동 1,674만 세대
피부양자 (2,003만 명)	-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 소득 : (기존) 연소득 최대 1억2천만원 초과 → (개편) 3,400만원 초과  * 재산 : (기존) 과표 9억원 초과 → (개편) 5억 4천만원&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노인, 청년(30세 미만), 장애인 등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4년간 30% 감면	지역가입자 전환 35만명(30만 세대)  피부양자 유지 1,968만명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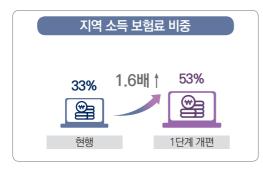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25%의 보험료 변동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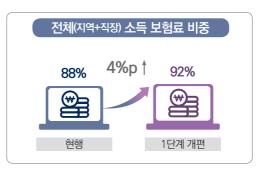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보험료 비중 증가로 보험료 산정 시 생활 형편 반영 비중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

- 2단계 개편(2022.7월 예정) 시행 시 지역·직장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추가 개선
  -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자동차보험료 면제 확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확대 등

구분	1단계	2단계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	614만 세대
보험료 인하	(2.2만원/월, 보험료의 21%)	(4.7만원/월, 보험료의 45%)
보수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14만 세대	29만 세대
보험료 인상	(보수 외 소득자의 6%)	(보수 외 소득자의 14%)
피부양자	30만 세대	46만 세대
지역가입자 전환	(有소득 피부양자의 12%)	(有소득 피부양자의 19%)

자료: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소요

-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으로 2018년(7월~12월) 보험료 수입 3,539억원 감소 예상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로 보험료 수입 감소, 보수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및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
    -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에는 보험료 수입 2조 2,928억원 감소 예상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변동 예상

(단위: 억원)

구	분	보험료 수입 변동 예상	
	지역가입자	△5,372	
1단계 개편(2018.7.)	직장가입자	1,095	
* 7~12월 기준	피부양자	738	
	소계	△3,539	
	지역가입자	△31,846	
2단계 개편(2022.7.)	직장가입자	4,254	
* 연간 기준	피부양자	4,664	
	소계	△22,928	

주: '18.2월분 보험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임

1단계 개편은 '18.7월분 보험료(8.10.까지 납부)부터 개편 반영됨을 고려하여 5개월분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2017.8.9.)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2016년 기준 62.6%)을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개선 추진
  - 2017~2022년 6년 동안 총 30.6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수지 흑자를 유지하여 2017년 기준 누적 적립금이 20조 7,733억원 이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회를 위한 지출 증가 등 대규모 재정 수반 요인이 있으므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험료 수입 등(A)	329,412	364,685	393,661	421,803	453,035	486,221	512,151
정부지원(B)	50,362	53,507	58,072	63,221	70,974	70,974	67,839
지출(C)	373,766	388,035	415,287	439,155	482,281	526,339	572,913
당기수지(A+B-C)	6,008	30,157	36,446	45,869	41,728	30,856	7,077
누적재정수지	15,600	45,757	82,203	128,072	169,800	200,656	207,733

주: '보험료 수입 등'은 보험료 수입과 기타 수입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박인재 예산분석관(02-788-3740)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추진

####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2018.4.4.)

- 정부는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초등학령기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령기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돌봄과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

#### 돌봄서비스 공급 계획



자료: 범정부 공동추진단,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2018.4.4.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5년(2018~2022년) 동안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 약 1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
  - 초등돌봄교실은 2018~2022년 동안 3,500개실 설치에 5,985억 투입 예정
    -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내에 별도 교실을 마련하여 방과 후 돌봄 제공, 오후돌봄교실(~17시)과 저녁돌봄교실(~22시)이 있음
  - 교실활용의 경우 2018~2020년 기간 동안 추진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3년 간 80억소요)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21~2022년 동안 1,508억을 투입하여 1,500개실 확충 예정
    - 교실활용: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돌봄 제공

- 다함께돌봄의 경우 2018~2022년 동안 총 3.506억을 투입하여 1.817개소 구축 계획
  - 다함께돌봄: 작은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 연도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재정

(단위: 억원, 개실, 개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신규돌봄 시설·반 수
학교돌봄	초등 <del>돌</del> 봄교실	1,180	1,201	1,201	1,201	1,201	5,985	3,500
익파글곰	교실활용	_	_	_	598	930	1,508	1,500
마을돌봄	다함께돌봄	18	245	629	915	1,699	3,506	1,817
	계	1,198	1,446	1,830	2,714	3,830	10,999	6,817

- 주: 1. 신규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방비 통합
  - 2. 2018년은 본예산 기준, 2019~2022년은 재정 소요 계획 기준
  - 3. 신규시설 수는 2018~2022년 누적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온종일돌봄체계'추진 배경

- 초등학생 돌봄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간(13~15시)과 일반 근로자 퇴근시간(17~18시) 사이에 돌봄공백 발생
  - 방과 후에 학원, 초등돌봄교실, 공부방 등을 이용하는 아동 중 기관 이용 후에 1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아동이 약 31.4%
  - 2017년 2~3월 기간 동안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 퇴사
- 우리나라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 지원에 한계
  - 현행 초등돌봄사업들은 서로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그 소관부처도 다르고 지원내용도 상이한 실정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사업을 통해 2017년 기준 총 14,948개 돌봄기관이 약 209만 7,000명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일부 초등돌봄 제공 중

#### 주요 초등돌봄 사업 운영 현황

(단위: 개실, 개소, 천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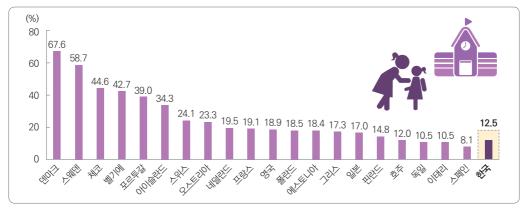
분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어린이집	다함께돌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소관부처	교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용 대상 학년/연령	초·중·고 학생	초1~6학년	초·중등 학생	만12세 이하 초등학생	만6~12세	초4~중3학년
소득기준	없음	없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 이하	없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형태	유상	무상 (저소득층·교육비 지원대상 외 아동의 경우 급·간식비 등 일부 부담)	무상 (저소득 가구 외 아동의 경우 교재비 등 일부 이용료 부담)	무상	유상 (간식비 등 이용료)	무상
운영기관 수	6,229	6,054	4,189	268	23	250
초등학생 이용 인원	1,729	245.3	108.6	2.6	1.2	9.8
2018년 예산	534,664	322,137	328,323	925	1,790	40,024

- 주: 1. 운영기관 수 및 초등학생 이용인원은 2017년 기준. 단, 다함께돌봄 사업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2018년 계획 기준
  - 2. 한 아동이 여러 돌봄서비스를 중복 이용 가능
  - 3. 2018년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 포괄이며, 추경 포함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우리나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 정도가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공적돌봄이용률은 12.5%로 덴마크(67.6%), 스웨덴(58.7%), 프랑스(19.1%), 영국(18.9%), 일본(17.0%) 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저조

#### 초등학생 공적돌봄 이용률



주: 외국의 경우 2014년 기준,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및 범정부 공동추진단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 초등돌봄사업 통합관리방안 마련 및 지역별 맞춤형 설계 필요

- 현재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어린이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사업 등 여러 초등돌봄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에는 일부 사업에 대한 계획만 제시
  -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명시한 초등돌봄교실, 교실활용,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사업 외에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사업들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 필요
  - 돌봄서비스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다원화 되어있는 전달체계를 통합관리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별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필요
  - 지역별 초등학생 인구 및 돌봄수요에 대한 고려 필요
  -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간 확보 가능 여부와 활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검토 필요

###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발표

####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추진 배경

- 국유재산¹¹은 실물자산으로서 국가 재정운용의 중요 수단이므로 적극적인 활용·개발을 통해 가치 증대 및 혁신성장 등을 지원할 필요
  - 2017년 말 기준으로 국유재산의 총 규모는 1,075조원이며, 전(全) 국토면적 중 국유지 비중은 4분의 1 수준(24.9%)으로 국가재정에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
    - 최근 청사,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시설의 노후화 및 이전·통합에 따라 대규모 유휴 국유지가 증가 추세
  - 도시재생 등과 연계한 국유지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수행

#### 2017년도 유형별 국유재산 현황

(단위: 조원, km², 만필지, %)

행정재산			일반재산				총계	
가액	면적	필지	가액	면적	필지	가액	면적	필지
800.0	24,192	499.5	275.0	803	68.4	1,075.0	24,995	567.9
(74.4)	(96.8)	(88.0)	(25.6)	(3.2)	(12.0)	(100.0)	(100.0)	(100.0)

자료: 201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관리는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재정수입 및 보전 측면이 강조된 현재의 국유재산 관리제도(획일적 사용요율·사용기간,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매각대금 선납원칙 등)는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저해

#### 정부는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을 발표(2018.5.10.)

- 정부는 2017년 8월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18년 5월
   이를 구체화하여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
  - 이번 개선방안의 정책목표는 국가 재정운용의 정책수단 중의 하나인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sup>1)</sup>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청사, 관사, 학교 등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도로, 하천, 제방, 항만, 공항 등 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정부기업이 사무용·사업용 또는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문화재, 사적지 등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구분

- 동 개선방안은 정책과제와 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18년 하반기 중에 세부 추진사항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 정책과제: 신성장 산업 지원과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서민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국유재산 활용 여건 개선과 국유재산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 과제별 세부 추진사항
    - ① 태양광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설치 시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국유지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신성장 산업 지원'
    - ② 국유지, 노후 청사 및 군사시설의 개발 지원을 통해 '유휴 국유지 개발'
    - ③ 농·어·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 중·소규모 건물 사용료, 사용료 연체요율 등을 인하하여 '서민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
    - ④ 고용위기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국유지 임대요율 감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 ⑤ 국유지 단기사용, 국유지 산단 입주 등의 활성화를 통한 '국유재산 활용 여건 개선'
    - ⑥ 전자계약 도입, 분납 신청 기한 조정 등 '국유재산 이용 편의성 제고'

	정책과제	세부 추진사항
혁신성장 지원	신성장 산업 지원	<ul> <li>- 공공시설 공중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지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li> <li>-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설치 시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국유지 활용도 제고</li> </ul>
	유휴 국유지 개발	국유지, 도심 노후복합청사 및 군사시설의 개발 지원
민생안정 지원	서민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	농·어·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 중·소규모 건물 사용료, 사용료 연체요율 등 인하
건강한경 시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위기지역 등 취약지역, 도시재생 혁신거점에 대한 국유지 임대요율 감면 등
국민편익 제고	국유재산 활용 여건 개선	국유지 단기사용, 국유지 산단 입주 등의 활성화
국 교민국 제 <b>포</b>	국유재산 이용 편의성 제고	전자계약 도입, 분납 신청 기한 조정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2018.5.10.

### 주요 재정이슈

- 정부는 동 개선방안을 통해 혁신성장, 민생안정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증대와 재산가치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산 3개 지역에 토지개발 시범사업 추진시, 개발과정에서 약 6.7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3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 기대
  - 서민·중소기업의 국유지 사용부담 완화 등을 통한 민생안정 사용료 분할 납부기준 하향(연 100만원→50만원 이상), 사용료 인상 한도율 하향(연 9→5%), 사용요율 인하(농·어·축산업, 취약지역 5→1%) 등
  - 활용곤란 재산 등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전체 대부료 수입 증가 국유일반재산 연간 대부료 수입은 1,000억원 수준으로 대부 활성화를 통해 10% 활용도를 제고할 경우, 매년 100억원 수입 증가
  - 유휴 국유지의 위탁개발 이후 재산가치 증대 기존 건축개발 완료(13건) 이후 2.817억원(투입자산 대비 53%) 가치 증가

##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 기획재정부는 338개 공공기관1)의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공시(2018.4.30.)

-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 총액은 811.2조원, 부채 총액은 495.9조원, 당기순이익은 7.2조원으로, 2016년 대비 자산 11.2조원 증가, 부채 4.5조원 감소, 당기순이익은 8.2조원 감소함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2016년 167.0% → 2017년 157.3%)과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2016년 79.8% → 2017년 75.1%)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에 힘입어 하락
  - 공공기관의 2017년의 당기순이익 감소(8.2조원)는 주로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의 수익 감소에 기인
    - 한국전력공사: 연결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단가 상승과 연료비증가 등에 따른 수익 감소(△5.7조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하반기 이후 실시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기인한 보험사업비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2.4조원)
    - 한국철도공사: 통상임금 반영 및 임금인상 영향에 따른 수익 감소(△0.6조원)

###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a)	2017 (b)	증감액 (c=b - a)	증감률 (c/a)
공공기관 자산	760.7	777.9	781.3	800.0	811.2	11.2	1.4
공공기관 부채 부채비율 국가채무 대비 비율	520.5 (216.6) (106.3)	519.3 (200.8) (97.4)	504.9 (182.6) (85.4)	500.4 (167.0) (79.8)	495.9 (157.3) (75.1)	△4.5 (△9.8) (△4.8)	△0.9 - -
공공기관 자본	240.3	258.6	276.5	299.6	315.3	15.7	5.2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5.2	11.4	12.4	15.4	7.2	△8.2	△53.0

- 주: 1. 부채비율은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총자본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임
  - 2.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보고서 재발행(2018.6.) 수치를 적용함
- 자료: 기획재정부,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무결산 결과는 재무건전성을 부채비율이 아닌 BIS비율로 관리하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재무현황 제외
  - 은행형 공공기관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2017년 기준 2.53%로, 0.71%인 일반은행 보다 높음
  - 은행형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sup>2)</sup>이 있으며, 따라서 향후 발생 가능한 정부 재정부담의 방지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sup>1)</sup> 기획재정부가 201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의 338개 기관(2017년 대비 8개 증가)

<sup>2)</sup>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

### 정책사업 관련 부채 증가 및 발생손실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필요

- ▼분회계<sup>3)</sup> 도입기관(39개)의 2017년 총부채는 2014년말 대비 25.3조원 감소하였으나, 이 중 정책사업에 따른 부채는 같은 기간 2.04조원 증가
  - ※ 다만, 9개 기관중 2개 기관의 부채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정책사업의 부채감소는 주로 4대강 사업 등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 활용 및 정부의 4대강 부채 분담계획 이행에 의해 차입금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 정책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관에서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사업 부채 증가 및 발생손실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세밀한 관리 필요

### 구분회계 도입기관 정책사업 부채

(단위: 조원)



주: 2014년말 대비 2017년 증감액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구분회계 도입기관 정책사업 자본 및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 주: 1. 자본은 2014년말 대비 2017년 증감액
  - 2. 당기순이익은 2014~2017년 합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sup>3)</sup> 기획재정부는 2013년 12월 수립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 발생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함. 구분회계단, 자산·부채, 수익·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구분회계 단위 성격은 크게 ①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따른 고유사업, ②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 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사업, ③관련 법령 등에 따른 대행·위탁사업으로 구분함

### 일부 손실보전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 13개 손실보전공공기관<sup>4)</sup>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일부 기관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발생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5~2017년간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총 3조 4,61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 그 외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2015~ 2017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 동 기관의 손실이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는 이들 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 필요

### 13개 손실보전공공기관의 재무현황

(단위: 억원)

			당기선	<u> </u>	
		2015	2016	2017	합계(2015~2017)
	한국광물자원공사	△20,636	△9,874	△4,106	△34,616
	기술보증기금	265	△1,596	△2,109	△3,440
	한국무역보험공사	△1,957	△5,578	△419	△7,953
	신용보증기금	△3,697	△5,945	22	△9,620
비	대한석탄공사	△626	△824	△799	△2,248
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6	△28	△186	△98
형	한국장학재단	423	△243	514	694
	중소기업진흥공단	184	△1,074	△958	△1,848
	한국주택금융공사	△114	5,309	3,124	8,318
	한국토지주택공사	9,801	22,370	27,889	60,061
	소계(A)	△16,240	2,518	22,972	9,250
	중소기업은행	11,506	11,646	15,085	38,237
은행	한국산업은행	20,881	△20,616	5,634	5,898
형	한국수출입은행	411	△14,692	168	△14,113
	소계(C)	32,798	△23,663	20,887	30,022
	합계 (A+C)	16,557	△21,145	43,859	39,272

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재무정보와의 기준일치를 위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 부채는 제외한 공시 기준(AUP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sup>4)</sup> 손실보전공공기관이란 기관 설립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거나,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임. 따라서 손실보전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보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

## 주요 재정관련 평가보고서

### [2018년 기금평가 결과 국회 제출]

### 기획재정부는 2018년 기금평가 결과를 5월 31일 국회 제출

-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사업성과·자산운용 실태 등 기금운용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금 자산운용평가와 기금 존치평가로 구성
  - 2018년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6개 기금에 대해 자산운용평가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34개 기금에 대해 존치평가를 실시

### 46개 기금의 2017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8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는 등 총 평점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72.6→72.9점)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이 '탁월'등급을 받은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등급을 받음

###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평가등급	기금
탁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8개
우수	국유재산관리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등 10개
양호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21개
보통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응급의료기금, 주택도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6개
아주 미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개

자료: 기획재정부

# 2018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조건부 존치로 평가

-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
  -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가 과다함에도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재산형성을 지워하기 위한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

### 사업의 적정성이 낮은 14개 사업 및 재원의 적정성이 부족한 8개 기금에 대해 제도개선 등을 권고

- 장애인취업지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2개 사업은 통합 권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근로복지진흥기금), 저축장려금지급(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등 13개 사업은 제도개선 권고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은 사업 통합과 제도개선을 모두 권고 받음
- 국유재산관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4개 기금은 과다한 중기가용자산 규모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권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자체수입비중 증대 등을 권고,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4개 기금은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사업축소 검토 등을 권고

### 2018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재원구조 적정성

재원의 적정성 판단 기준	기금명	개선권고
중기가용자산 규모 과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재원조성 방법의 부적정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체수입비중 증대, 자체수입원 개발
중기가용자산 규모 과소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업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사학진흥기금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업축소 검토

자료: 기획재정부

### 기금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 예정

- 자산운용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상·하위 1/3 기금의 기금운영비 삭감·증액 예정
- 기금존치평가 결과는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
- 기금평가단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5월 31일 국회에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부담금관리기본법」제7조에 따라 각 부처의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과·징수 실적, 사용내역 등 부담금 관련 제반정보 수록

## 2017년도 부담금의 수는 총 89개로 전년 대비 1개 감소하였으나, 징수규모는 20.2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 증가

- 오염총량초과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1개 감소
- 징수액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55개 부담금에서 9,815억원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등 26개 부담금에서 4,960억원 감소
  - 한편, 8개 부담금이 징수 실적이 없는 가운데,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분담금, 시설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없고, 광물수입·판매부담금은 하위법령 미비로 징수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 검토 필요

## 2017년에 징수한 부담금 중 17.3조원(85.9%)은 중앙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2.1조원(10.6%), 공공기관 등이 0.7조원(3.5%)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의 실질적 부과 및 징수주체인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귀속 불균형 현상은 개선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단위: 억원, %)

78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계
구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55/12 5	입계		
금액	138,120	34,970	11,264	10,091	7,117	201,562		
비중	68.5	17.3	5.6	5.0	3.5	100.0		

자료: 기획재정부

# 외국의 재정동향

- 미국 CBO, 2018년 장기 재정전망 발표
- OECD,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 통계 발표
- 유럽연합(EU), 2019년 예산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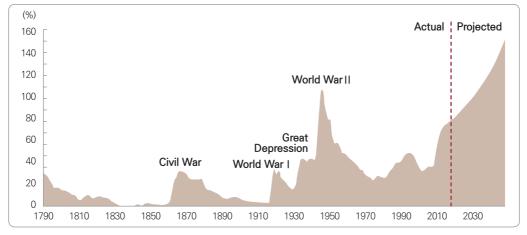


## 미국 CBO, 2018년 장기 재정전망 발표

미국 CBO(의회예산처)는 향후 30년간 미국의 재정전망을 수록한 「2018년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2018. 6. 27.)

- 미국 CBO¹)의 「2018년 장기 재정전망」²)은 현행 법률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0년을 기준(10-year baseline)으로 한 기준선 전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전망
- 재정적자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가 향후 30년간 큰 폭으로 상승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18년 78% → 2028년 96% → 2038년 118% → 2048년 152%
  - 2048년의 국가채무 비율은 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전의 최고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06%)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 2018년 장기 재정전망, 201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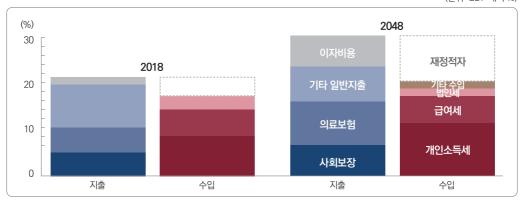
- 재정적자는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심화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2018년 3.9% → 2028년 4.9% → 2038년 6.1% → 2048년 8.4%
  -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정적자 심화의 주 요인은 이자비용,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sup>1)</sup>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up>2)</sup>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 항목별 지출·수입 및 재정적자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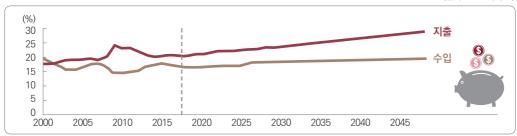


자료: CBO, 2018년 장기 재정전망, 2018. 6.

- 이자비용 지출은 금리 인상과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
  - GDP 대비 순이자비용 비율 2018년 1.6% → 2028년 3.1% → 2048년 6.3%
  - 2048년의 이자비용 지출은 사회보장 비용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
- 이자비용 외 일반 지출 역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증가
  - GDP 대비 일반 지출 비율 2018년 19% → 2048년 23%
  - 의료보험 지출 증가는 주로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영향이 크며, 노인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전반에서 국민 1인당 국가 재정부담액이 증가
-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상승기조를 유지하나 재정지출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함
  -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2018년 16.6% → 2028년 17.5% → 2038년 18.8% → 2048년 19.5%
  - 재정수입 증가의 주 요인은 개인소득세 수입 증가

###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 2018년 장기 재정전망, 2018. 6.

산업예산분석과 오은선 예산분석관(02-788-4631)

## OECD,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 통계 발표

### OECD 발표(2018.4.9.)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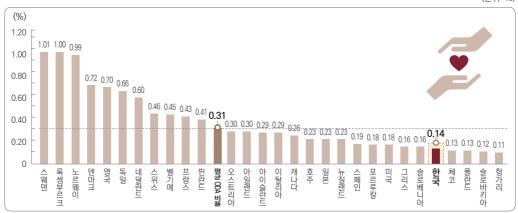
-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¹¹는 2017년 잠정²¹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순지출 기준)를 1,466억불로 발표(2018.4.9.)
  - 2017년 잠정 ODA 규모(1,466억불)는 전년(1,450억불) 대비 1.1% 증가(실질증가율 △0.6%)
  - ODA 규모로 볼 때, 상위 5개국은 미국(353억불), 독일(242억불), 영국(179억불), 일본(115억불), 프랑스(114억불)(위 5개국 ODA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7%)
- OECD DAC 회원국(29개국) 중 14개국의 ODA 규모는 전년(2016년) 대비 증가한 반면,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은 감소
  - 전년 대비 ODA 규모가 증가한 국가는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이고, 감소한 국가는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 ODA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난민비용 감소(스위스, 노르웨이), 다자간 원조 감소(호주) 등 다양
-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적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31%로 전년(0.32%)
   대비 0.01%p 감소
  -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1.01%), 룩셈부르크(1.00%), 노르웨이(0.99%), 덴마크(0.72%), 영국(0.70%)

<sup>1)</sup> OECD의 3대 위원회 중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원조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ODA의 규모, 질,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동료심사, 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

<sup>2)</sup> 최종 ODA 통계는 OECD DAC 통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

### 2017년도 OECD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잠정통계 기준)

(단위: %)



자료: OECD DAC

### 2017년 우리나라의 ODA 실적

- 우리나라 ODA 규모(잠정 통계 기준)는 전년 대비 41.2백만불 감소(△1.8%)한 22억불(DAC 회원국 29개국 중 15위)
  - 전년 대비 양자원조는 증가(4.5%, 16.2억불)했으나, 다자원조가 큰 폭으로 감소(△15.9%, 5.9억불)
  - 다자원조의 감소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자금 납부계획상 2017년에는 1회만 납부 (2016년에는 2회 납부)한 것에 기인
    - AIIB 출자금은 2016~2019년까지 5차례 분할납부하기로 계획되어 있어(2016년 2차례, 2017~ 2019년 매년 1차례씩) 2017년 출자금이 2016년 대비 1.5억불 감소

### 2016~2017년 우리나라 ODA(잠정 통계) 실적

(단위: 백만불, %)

	2016	2017	비중	증감율
ODA (A+B)	2,246	2,205	100.0	△1.8
양자 ODA (A)	1,548	1,618	73.4	4.5
무상원조(KOICA 등)	985	1,035	64.0	5.1
유상원조(EDCF)	563	583	36.0	3.4
다자 ODA (B)	698	587	26.6	△15.9

주: 순지출액(총지출액-회수액) 기준

자료: 외교부

### 외국의 재정동향

-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로 전년(0.16%) 대비 0.02%p 감소
- 이번 GNI 대비 ODA 비율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2015.11.)」에서 세운 목표치(0.16%)에 0.02%p 못 미치는 수준

### ODA/GNI 비율 목표와 실적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잠정)
목표	0.15	0.18	0.21	0.25	0.15	0.16
실적	0.14	0.13	0.13	0.14	0.16	0.14

주: 2011~2015년 ODA/GNI 목표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년 의결)에서 제시하였으며, 2016~ 2020년 ODA/GNI 목표는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5년 의결)에서 설정됨

자료: 국무조정실

- ODA 사업 관리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ODA/GNI 목표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되, 우리나라는 ODA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신흥공여국<sup>3)</sup>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ODA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관리에 충실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sup>3)</sup> 우리나라는 2009.11.25.OECD DAC 가입

## 유럽연합(EU), 2019년 예산안 발표

EU는 승인기준 1,656억 유로(전년대비 3.1% 증가), 지급기준 1,487억 유로(전년대비 2.7% 증가)로 편성한 2019년 예산안을 발표(2018.5.23.)<sup>1)</sup>

- 승인기준 예산(1,656억 유로)은 한화로 약 216조 3,481억원, 지급기준 예산(1,487억 유로)은 한화로 약 194조 2,691억원의 규모<sup>4)</sup>
  - EU의 경제성장 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48.3%인 800억 유로(전년대비 3.1% 증가)를 '스마트· 포용적 성장'분야에 편성
  - 농·어민 지원, 기후변화 대응,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 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6.2%인 600억 유로(전년대비 1.2% 증가)를 '지속가능한 성장(천연자원)'분야에 편성
  - 이 외에, '안보·시민권'분야에 37억 유로(전년대비 6.7% 증가), '대외정책'분야에 114억 유로(전년대비 13.1% 증가), '행정비용'분야에 100억 유로(전년대비 3.0% 증가), '특수기금'분야에 6억 유로(전년대비 13.1% 감소)를 편성

#### [참고자료] 유럽연합(EU)의 예산<sup>2)</sup>

### 〈규모〉

- 2019년 EU의 예산(1,656억 유로)은 28개 EU 회원국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16조 4,840억 유로)의 1%. 공공 지출(7조 4.460억 유로)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sup>3)</sup>
- EU 회원국 GNI 대비 EU 예산의 규모는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수입〉

- EU 회원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수 중 일정 비율 징수금, EU 회원국이 납부하는 GNI 대비 분담금 등세 가지 재원을 통해 수입 확보
- GNI 대비 분담금이 가장 주요한 재정요소이며, 관세에 기반한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지출〉

- 스마트·포용적 성장(Smart and 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natural resources), 안보·시민권(Security and citizenship), 대외정책(Global Europe), 행정비용(Administration)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출
-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인 승인기준(Commitment Appropriation, CA)과 당해 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인 지급기준(Payment Appropriation, PA) 각각이 정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sup>1) 2019</sup>년 예산안은 영국이 2020년까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며 예산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

<sup>2)</sup> 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19년 EU 예산안 관련 질의응답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8-3883\_en.htm

<sup>3) 28</sup>개 EU 회원국의 GNI 및 공공지출은 2018년 5월 3일 기준 예측치

<sup>4) 2018</sup>년 7월 9일 기준 유로-원 환율(1유로 당 1,306원) 적용

### 2019년 EU 예산안

지출 분야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2018년 예산 대비 증감률	
시눌 군아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1. 스마트·포용적 성장	80.0	67.5	77.5	66.6	3.1	1.3
1a.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	22.9	20.5	22.0	20.1	3.9	1.8
1b.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57.1	47.1	55.5	46.5	2.8	1.1
2. 지속가능한 성장(천연자원)	60.0	57.8	59.3	56.1	1.2	3.0
3. 안보·시민권	3.7	3.5	3.5	3.0	6.7	17.0
4. 대외정책	11.4	9.5	10.1	8.9	13.1	6.8
5. 행정비용	10.0	10.0	9.7	9.7	3.0	3.0
6. 특수기금 (원조기금, 유럽연합기금, 세계화조정기금 등)	0.6	0.4	0.7	0.5	△13.1	△20.4
합계	165.6	148.7	160.7	144.8	3.1	2.7
EU 28개국 GNI 대비 비율	1.0	0.9	1.0	0.9	_	_

자료: EU 2019년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19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5)은 청년 고용, 성장, 안보

- 전년 대비 3.1% 증액된 800억 유로를 성장 및 고용, 경제촉진 분야에 배정
  - 국제적인 공동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 전년대비 8.4% 증액된 125억 유로 편성
  -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제고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Erasmus+)에 전년대비 10.4% 증액된 26억 유로 편성
  -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지원프로그램인 청년고용계획 (Youth Employment Initiative)에 2억 유로 추가 편성
  - 기반시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통·통신·에너지인프라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에 전년대비 36.4% 증액된 38억 유로 편성
- EU 내·외부의 결속 촉진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
  - 난민 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난민보호시스템 개혁 단행
  - 유럽국경해안경비대, 난민사무소, 기타 국경 및 비자 발급 관련 기관 보강
  - 시리아 및 기타 지역 피난민에게 식량, 교육,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터키에 위치한 난민 시설에 15억 유로 추가 편성

(단위: 십억유로, %)

<sup>5)</sup> 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도자료(2018.5.23.)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3870\_en.htm

# 지리당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 & 이슈

**2018년 여름** 통권 제6호

발행일 2018년 8월 10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 Name Fiscal Trends & Issues 개정동향 & 이슈

